

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11. 12.>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(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)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 제1호	10만원		
나. 법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경우	법 제32조제2항 제2호	10만원		
다.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	법 제32조제1항	20	30	40

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제1호	만원	만원	만원
라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경우	법 제32조제1항제2호	50만원	60만원	70만원
마.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경우	법 제32조제1항제3호	50만원	60만원	70만원
바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) 휴업·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)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2항제3호	10만원 50만원		
사.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2조제1항제4호	10만원	15만원	20만원
아.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2조제1항제5호	80만원	90만원	100만원